



제 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지정 및 임면, 명령, 등록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54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지정 및 임면, 명령, 등록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	3
2. 부 칙	14
IV. 입법의 재정영향	16
[참고자료]	17

I. 제안경위

1.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2. 제안일: 2025. 12. 30.

3. 회부일: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를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한 자, 산지경매사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를 산지경매사로 임명한 자, 산지경매사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자, 판매금지의 대상이 된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탁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 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한 자, 상장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한 자,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자 및 소비량이 많아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1조 등).

Ⅲ. 검토의견

1.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지정 및 임면, 명령, 등록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산지중도매인 지정·산지경매사 임명 또는 산지경매사의 면직 규정을 위반한 경우(안 제61조제1호·제3호·제4호), 판매·유통금지 대상 수산물 등 수탁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한 경우(안 제61조제6호), 상장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하거나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경우(안 제61조제7호·제8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안 제61조제9호)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 ----- ----- -----.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	<삭 제>

<u>중도매인을 지정한 자</u> 2. (생략)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 <u>경매사를 임명한 자</u>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지 <u>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자</u> 5. (생략)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 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 · 기피한 자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 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 한 자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 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0. · 11. (생략)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신설>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0. · 11. (현행과 같음) 제63조(과태료) ① ----- ----- -----.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 <u>중도매인을 지정한 자</u>
--	---

<u><신 설></u>	<u>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 경매사를 임명한 자</u>
<u><신 설></u>	<u>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지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u>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 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 · 기피한 자</u>
<u><신 설></u>	<u>5.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 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 한 자</u>
<u><신 설></u>	<u>6.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자</u>
<u><신 설></u>	<u>7.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 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u>
<u>1. ~ 4. (생 략)</u>	<u>8. ~ 11. (현행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u>
<u>② · ③ (생 략)</u>	<u>② · ③ (현행과 같음)</u>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경매인에 대한 자격금지 기준과 지정·임명 금지 및 면직에 대해 규정하고¹⁾, 위판장개설자로 하여

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②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금 판매·유통금지 대상 수산물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입하된 수산물의 수탁과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차별대우를 금지함2).

또한, 법 제18조제3항·제4항³⁾을 위반하여 상장된 수산물 외의 수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위판장개설자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경합되는 산지중도매업을 하려는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①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7조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산지경매사로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해당 위판장의 산지중도매인 또는 그 임직원

5. 제26조제3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6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위판장개설자는 산지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② 위판장개설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수산물의 수탁과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탁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산물에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라 판매금지의 대상이 된 수산물인 경우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수산물인 경우

4. 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출하된 수산물인 경우

5.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하계약을 위반하여 출하된 수산물인 경우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수산물의 규격에 따르지 아니한 수산물인 경우

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③ 산지중도매인은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한 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입산이나 원양산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수산물의 경

산물을 거래하거나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법 제27조제2항4)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지정 및 임면, 명령, 등록 등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2025년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하여 보고·검사 위반 등 18개 유형의 경미한 의무위반⁵⁾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개선과제를 추진한 바 있음.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지중도매인 간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과잉생산 수산물의 처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2.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위해 발생의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산물
2.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로서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3. 그 밖에 취급 방법, 유통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이력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산물

5) 통지·표시·조사·검사 등 「법령집안심사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18가지([참고 1] 참조)

< 경제형벌 합리화 정비 기준 >

- ① 법령입안기준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 행위 유형*(17개)에 속하는 경우
→ 원칙적 과태료 전환
 - * 인허가, 신고, 보고, 행정상명령, 조사, 계획, 유사명칭, 교육, 강제보험, 게시, 보존, 통지, 인력배치, 인증, 검사, 표시, 토지출입 등
- ② 과태료 전환 시 원칙적으로 벌금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되, 위반행위 가벌성, 벌금-과태료 간 체계 등을 고려하여 금액 조정
- ③ 형사벌 필요성이 있더라도 유사입법례에 따라 과도한 수준 다소 완화하되, 손해배상 등 금전적 책임성 강화

자료 : 해양수산부

□ 개정안은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지정 및 임면, 명령, 등록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미한 위반행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⁶⁾ 및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

6) 헌법재판소 판례(2018.8.30., 2017헌바368)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종류와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이 결정의 반대의견은 “행정질서벌만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형벌을 도입한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2024), p.582

행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적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친 형사처벌을 억제하여 다수 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준」에 따르면 행정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의 유형 및 법정형의 결정은 입법재량의 영역이나, 행정질서벌만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형벌을 도입한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는바,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지정 및 임면, 명령 등 경미한 수준의 위반행위는 그 성격상 행정질서벌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고, 형벌은 고의적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형벌의 보충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례⁷⁾ 등에서 행정수단 가운데 행정형벌은 최후로 선택해야 한다는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하나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 제재적 성격의 행정처분이 병과되고 있는 경우 다른 간접적 강제수단도 제재적 성격을 지녀 헌법 제13조⁸⁾와의 관계에서 이중처벌로 보여질 우려도 있다는 의견⁹⁾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7) 헌법재판소(2012.12.27., 2011헌바354) :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소원

행정형벌제도는 원칙적으로 행정명령에 대한 의무확보수단으로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행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는 결국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제재수단도 가능하다면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 등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8)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도 제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판매·유통금지 대상 수산물 등 수탁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한 경우(안 제61조제6호) 수탁은 단순 거래 이외에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형벌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 무자격자의 산지중도매인 지정·산지경매사 임명 또는 산지경매사의 면직 규정을 위반한 경우(안 제61조제1호·제3호·제4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¹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고려하여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산지경매사 임명 또는 산지경매사의 면직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최환용, 「행정형벌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5), p.27

제재는 본질적으로 부과된 의무의 성격에 따른 것이어야 하나, 다양한 제재수단을 하나의 법률체계에서 중복하거나 병과되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영업의 취소·정지 등 다른 간접적 강제수단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런 경우에 다른 간접적 강제수단도 제재적 성격을 가지며 헌법 제13조와의 관계에서 이중처벌로 보여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행정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 형벌을 제재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명확하며, 형벌을 일종의 보험으로서 활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형벌과잉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1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하였을 때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산지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임명하였을 때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하였을 때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 (이하 각호 생략)

(안 제61조제3호·제4호)는 농산물 경매사 관련 유사입법례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¹¹⁾하고 있는바, 농산물 경매사에 비해 산지경매사에 대한 벌칙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법령 간 형벌의 형평성과 균형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다음으로, 상장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하거나 허가 없이 산지 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경우(안 제61조제7호·제8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안 제61조제9호)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가·등록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¹²⁾로서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 확립 및 질서유지라는 법의 핵심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관리 제도의 근간을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명한 자

제82조(허가 취소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③ 산지중도매인은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한 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입산이나 원양산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지중도매인 간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과잉생산 수산물의 처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위해 발생의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산물
2.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로서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3. 그 밖에 취급 방법, 유통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이력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산물

훼손하는 실제적 위반행위로 보이는데, 현행 벌칙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농산물 유통 관련 유사입법례에서도 관련 규정 위반시 허가 취소 규정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¹³⁾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과태료 상한액의 설정은 행위의 위법성 정도나 사회적 영향 또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로, 종전 벌금형 상한 1천만원을 1천만원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 유지 및 현행법상 과태료 규정의 행위 위반과 비교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7의2. 제31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
8.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거래한 자
9.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

제82조(허가 취소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하였을 때
15.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때
1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하였을 때
-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31조제2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 6의2. 제31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 현행법 제63조제2항의 과태료 규정(500만원 이하)은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집행현황 미보고,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장부기록 보관 소홀 등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으로, 제63조제1항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에 비해 경미한 수준의 위반행위로 보이므로¹⁴⁾, 개정안에 따라 현행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할 경우 그 상한액은 1,000만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을 제시함.

1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른 입고·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부 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부칙).

[표]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1조제1호·제3호·제4호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제도의 계도 및 안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조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¹⁵⁾에 따라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¹⁶⁾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¹⁷⁾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15)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1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17)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895-896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⁸⁾.

문 의 처
02)6788-5419

18)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법령집안심사기준」 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 ① (인허가 등)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행정청의 인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에 관한 의무 위반행위
- ② (신고) 특정 영업이나 행위를 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영업 개시신고, 변경신고, 승계신고, 휴·폐업신고, 행위신고)
- ③ (보고)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이 특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특정 사실의 발생을 행정청에 통지, 통보, 신고할 의무 불이행, 법령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허가증·요금표 등 표지물의 게시 위반 등)
- ④ (행정상 명령)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법률상의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受忍) 의무 등을 불이행하는 행위(이행명령, 개선명령, 시정명령, 조치명령, 보완명령)
- ⑤ (조사)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감독을 받는 사업장, 공장, 창고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등을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조사의 방해·기피·회피, 자료제출·설명·보고 명령(요구) 불응, 출석이나 진술·답변 요구 불응)
- ⑥ (계획) 업무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 대책, 규정, 기준 등을 수립·작성하고 이를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립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⑦ (유사명칭) 법률상 특정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님에도 해당 자격명칭을 사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구성된 특정 기관의 명칭을 그 기관 외의 자가 사용하는 행위
- ⑧ (교육) 법률상 일정한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불이행하거나 관리자 등이 교육대상자에 대해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교육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보수교육, 연수교육, 안전교육, 위생교육)

- ⑨ (강제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 ⑩ (게시)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나 요금 등의 정보를 영업소, 사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는 행위
- ⑪ (보존) 법령에 따라 기록·보존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와 장부를 비치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 ⑫ (통지) 특정 사실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통보,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공지·공시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⑬ (인력배치) 업무상 특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인력을 선임, 지정, 배치하지 않는 행위
- ⑭ (인증) 사용이나 판매를 위해 사전에 검정이나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서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됨
- ⑮ (검사) 안전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받아야 하는 검사나 점검을 받지 않는 행위
- ⑯ (표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수단에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⑰ (토지출입)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 등 권한 있는 자가 공사, 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토지 출입 시에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⑱ (기타) 준수사항 위반, 겸직금지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2. 2. 22.>
2. 제23조의2제1항(제25조의2, 제3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수·합병을 한 자
3. 제25조제5항제1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 3의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준 자
4.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명한 자
5. 제29조제2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6. 제29조제4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자
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7의2. 제31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
8.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거래한 자
9.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
- 9의2.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2조제1항(제31조제3항, 제45조 본문, 제46조제1항·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11. 제69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민영도매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나 승인 없이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였거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2. 제17조제3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지

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한 경우

3. 제40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였을 때

2의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였을 때

4.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하였을 때

9. 삭제 <2014. 3. 24.>

10.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11.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12.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였을 때

13.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14.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때

1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하였을 때

17.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18.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20. 제41조제2항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21. 제42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22.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24.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5. 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6.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③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2.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경우
3.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4. 정가매매·수의매매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1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 2의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었을 때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하였을 때
5. 제31조제2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6. 제31조제3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6의2. 제31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7. 제42조(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9.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